

# 산학협력단 산업자문 운영 규정

제 정 : 2013. 1. 1.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은 핵심 기술역량이 취약한 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며, 우수한 기술역량을 보유한 전문가와 산업체를 연계하여 산업체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산업자문”이라 함은 금강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직원이 산업체,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(이하 “산업체등”이라 한다)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 애로기술지원(기술지도, 경영지도, 디자인지도 등) 및 컨설팅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산업교원”이라 함은 금강대학의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.
3. “산업자문료”라 함은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받으면서 금강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“산학협력단”이라 한다)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.

**제3조(산업교원 구성)** ① 산업교원은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을 시행하는 데 충분한 학식과 경력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교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산업교원은 기술분야, 경영분야, 디자인 분야 및 컨설팅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.

**제4조(산업자문 방법 등)** ① 산업체 등이 산업자문을 희망하는 경우 산업체 등 또는 산업교원은 산학협력단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산학협력단은 산업체 등 또는 산업교원의 신청에 응하여 산업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.

③ 산업교원은 산업자문결과를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산업자문료 납부)** ① 산업체 등은 산업자문료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산업체 등은 산업자문료로 산업교원 자격기준에 따라 시간당 최대 15만원 이내의 금액을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하며, 1일을 초과할 경우 일별 최대 40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산업자문료는 산업체와 산업교원이 산업자문료 산정기준(별표 1)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④ 산업자문료 책정 시, 산정기준(별표 1) 적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 금액을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**제6조(산업자문료 분배 및 지급)** ① 산업자문료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하는 연구중비안관리등급 고시에 따른 대학교 간접비 비율을 적용하여 산학협력단에 지급하고, 잔여 금액은 산업자문에 참여한 산업교원에게 지급한다.

② 납부 종료된 산업자문료는 매월 말에 정산하여 분배 지급한다.

**제7조(실적평가반영)** 산업자문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승진임용 및 재계약임용시 실적 및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토록 한다.

**제8조(기타사항)** 산업자문 신청서와 산업자문 결과 보고서 서식은 별표2, 별표3과 같다.

#### 부 칙

(시행일)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별표 1)

## 산업자문료 산정기준

### (1) 자격기준

| 자격<br>급수 | 자격기준              |  |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|--|
|          | 소속기관의 직급<br>(기준1) | 교육.연구경력<br>(기준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교육.연구경력<br>(기준3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A급       | 교수, 책임급 연구원       |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<br>그와 상응하는 경력<br>(해당분야 10년 이상 근무) | 석사학위 취득 후 16년 이상<br>그와 상응하는 경력<br>(해당분야 10년 이상 근무) |
| B급       | 부교수, 선임급 연구원      | 박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<br>그와 상응하는 경력                      |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<br>그와 상응하는 경력                     |

### (2) 지급체계

#### 가. 자문료

| 구 분 | 장기자문료(일기본급)   | 단기자문료(시간기본급)   | 비 고   |
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
| A급  | 400,000원/일 이하 | 150,000원/시간 이하 | 제세 포함 |
| B급  | 300,000원/일 이하 | 100,000원/시간 이하 | 제세 포함 |

※ 장기/단기 구분

- 장기자문 : 2일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자문
- 단기자문 : 1일 이내 1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자문

#### 나. 강연료

| 구 분 | 강연료       | 비 고   |
|-----|-----------|-------|
| A급  | 50만원/회 이하 | 제세 포함 |
| B급  |           | 제세 포함 |

### (3) 기타

- 가. 식비, 숙박비 등 체재비는 포함하지 않는다.
- 나. 단기자문료는 장기자문료 일기본급을 한도로 한다.



(별표 3)

## 산업자문 결과 보고서

| 산<br>업<br>교<br>원 | (인) | 결<br>재       | 산업교원         |    |    | 총장 |
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|----|----|
|                  |     | 처<br>리       | 담당           | 팀장 | 단장 |    |
| 자문분야<br>(주 제)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|    |    |
| 자문요청기관           |     | 연락처<br>(담당자) |              |    |    |    |
| 자문일시<br>(기 간)    |     |              | 자문료<br>(총 액) |    |    |    |
| 자문내용 및 결과보고 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|    |    |